공 개

의안번호	제 135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3. 18. (제 5 차)

의결사항

한국예탁결제원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3. 18.

1. 의결주문

한국예탁결제원(이하 “예탁결제원”)이 승인 요청한 별지의「증권등결제업무규정」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.

2. 제안이유

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등에 투자(매매)하는 경우, CLS 외환결제시스템을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는 시점(15~18시)이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결제대금 송금시한(13~14시) 및 결제시한(17시)보다 늦어 원활한 채권결제가 어려운 구조임.

이에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자금을 당일 채권결제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상 결제대금 송금시한을 18시 이후로 변경하고, 예탁결제원의「증권등결제업무규정」을 개정하여 결제시한을 19:50으로 연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□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을 연장 (안 제26조제1항제2호)

○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을 CLS외환결제시스템 종료 이후까지 충분히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환전자금이 당일 결제대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<별 지>

증권등결제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「증권등결제업무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제2호 중 “5시”를 “7시 50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<별 첨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기관투자자결제시한) ① 기관투자자결제의 결제시한(이하 "기관투자자결제시한"이라 한다)은 기관투자자결제회원이 정한 결제일의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. 1. (생 략) 2.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경우 결제일 오후 5시 ②·③ (생 략)	**제26조(기관투자자결제시한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-------7시 50분 ②~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공정시장과
연 락 처	02-2100-2681